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일부개정]

## ■ 시행일

- 시행령 : 2016년 9월 3일
- 시행규칙 : 2016년 9월 23일

## ■ 개정 주요항목

### ○ [시행령·시행규칙]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각 발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판단 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 ○ [시행규칙]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등을 통하여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가기관의 입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항목 신 · 구 대비표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7.28., 타법개정]</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 일부개정]</p>
<p><b>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b> 법 제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lt;후단 신설&gt;</p> <p>1. ~ 5. (생략)</p> <p>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p>	<p><b>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b> - 제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_____ _____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b>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b> (생략)</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b>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_____ _____ 기획재정부령으로 _____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_____ _____.</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2.1., 일부개정]</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일부개정]</p>
<p><b>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b> (생략)</p> <p>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생략) 마. <u>인감증명서</u></p>	<p><b>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b>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u></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2.1.,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일부개정]
<p>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마. (생략) 바. 인감증명서</p> <p>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생략) 마. 인감증명서 ③ ~ ⑧ (생략)</p>	<p>2. _____ 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p> <p>3.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 ⑧ (현행과 같음)</p>
<p><b>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생략)</b></p> <p>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b>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_____</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b>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생략)</b></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p>	<p><b>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_____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_____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_____</p>

※ 자세한 개정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지사항 참조